

美 연방정부, 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운영되나?

“미국 연방정부는 제품안전에 대한 불만 정보를 공유하는 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하였다.”

제품 안전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는 지난 3월 11일 소비자제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(SaferProducts.gov)를 신설했다. 소비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, 제품 결함 및 위험성을 볼 수 있고, 구매제품에 관한 안전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다.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결함을 신고하면 이에 대한 해당 제조업체의 답변도 게시되므로, 제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와 제조업체 양측의 입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지식창고라 할 수 있다. 기존에 미국은 제품이 리콜된 경우에만 업체명, 제품정보, 위해내용 등을 공표해왔는데, 금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소비자의 불평, 불만 단계에서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로써 기업이 제품안전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제품안전 관련 사회시스템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.

새로 개설된 미국 데이터베이스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. 소비자가 데이터베이스에 결함제품에 관한 상세한 설명, 제조업체명, 사용에 따른 위해성(위해 가능성)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, CPSC는 보고서가 양식에 맞는지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체에게 송부한다. 해당 업체는 보고내용에 대한 답변 및 의견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,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진이나 참고 설명서를 동봉할 수 있다. 제조업체의 답변이 충실히 작성되면, CPSC는 소비자의 결함보고서와 제조업체의 의견을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공표한다.

정확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공표

소비자는 허위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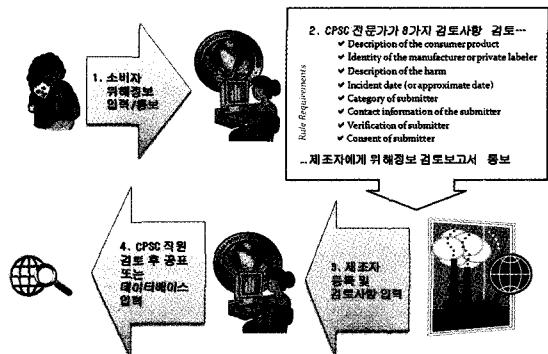
류지연 전문위원
(안전품질정책과)



며, 기재사항이 누락된 보고서는 공표되지 않는다. 만약 해당 제조업체가 결합보고서에 허위내용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, CPSC는 보통 7일내 진위여부를 조사한 후 정확한 정보만 선별하여 공표한다. 반면 결합보고서에 대한 제조업체의 답변도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업체의 답변을 공표하지 않는다. 보고서에 기밀정보가 기재되었을 때에도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해당 부분이 삭제된다.

CPSC는 지난 1월 24일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시범 운영하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내 비즈니스포털 등록을 받았다. 비즈니스포털에 등록한 제조업체는 자사제품 결함보고서를 e-mail로 받을 수 있으며, CPSC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보고서에 대한 이의 제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. 금년 3월 11일까지 비즈니스포털에 1,400여개의 제조업체가 등록되었고, 소비자들이 인터넷, 서면, 전화, 팩스를 통해 보낸 제품 결함보고서는 1,500여 건이 접수되었다.

CPSC위원장 Tenenbaum은 “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곧 권력이 있는 소비자이다. 누구나 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유제품 및 구매희망제품과 관련된 사고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. 따라서 소비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정보를 찾는 방법을 익힌다면,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

〈소비자제품 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〉